『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!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조상호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2020년 9월 개관 예정인 '스페이스 살림' 업무를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의 직무로 명시하고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산 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

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.

□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재단 대표이사의 직무로 스페이스살림을 규정(안 제8조)하고 재단의 결산서류 제출기한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로 규정(안 제15조)하였습니다.

□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